



제429회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구감소지역 학생 기회균형선발비율 명시〉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592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인구감소지역 학생 기회균형선발비율 명시	2
[참고자료]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0. 15.
3. 회부연월일 : 2025. 10.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통합 전형을 운영하면서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의 학생을 기회균형 특별전형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기회균형 특별전형의 선발 비율·대상 등은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학생의 교육여건 또한 계속 악화되고 있으므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학생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법률에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은 기회균형선발 시 인구감소지역에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해당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인구감소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8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인구감소지역 학생 기회균형선발비율 명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기회균형선발 대상에 ‘인구감소지역’의 학생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해당 학생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8제2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의8(사회통합전형의 운영) ① (생략) <u><신설></u>	제34조의8(사회통합전형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학의 장은 기회균형선발비율을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의 학생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부모가 있는 경우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 한정한다.
②·③ (생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의 전형 대상 및 제3항의 모집비율, 선발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음) ⑤ -----제4항의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구감소지역의 학생을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8학년도 입학생을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부터 적용한다.
---	--

□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8¹⁾에서 대학의 장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형 특별전형’을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하면서, 해당 전형의 선발대상 및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1) 「고등교육법」

제34조의8(사회통합전형의 운영)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대학 모집인원,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기회균형선발비율”이라 한다)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제34조의5제4항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기회균형선발비율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대학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전체 모집인원 중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전형 대상 및 제3항의 모집비율, 선발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제1항 및 제29조제2항에서 기회균형 특별전형 선발대상을 아래와 같이 6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선발비율은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²⁾.

[기회균형 특별전형]

근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6제1항)	선발대상	선발비율
제1호	장애인 등 대상자,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
제2호	국가보훈대상자	
제3호	서해 5도 학생	
제4호	자립지원 대상자	
제5호	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제6호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정하는 사람	

□ 한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³⁾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

2)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6(사회통합전형의 운영) ①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라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제2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항 제14호 각 목의 사람

→ 14.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

2.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3.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사람

4.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아동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정하는 사람

② 법 제34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구(특별시 제외)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곳으로, 해당 지역에 보육·교육·교통·의료 및 문화 등의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⁴⁾⁵⁾.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고시, 2024.2.27.) 기준

구 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참고 <인구감소지역 개요> p.11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학생의 교육여건 또한 계속 악화되고 있으므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 학생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법률에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기회균형선발비율을 정하는 경우 인구감소 지역에서 부모가 있는 경우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전체 모집 인원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기회균형 특별전형 대상에 인구감소지역의 학생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인구감소를 방지하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도 정주 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이 차별 없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회균형 특별전형의 대상으로 ‘농어촌 및 도서·벽지 학생’⁶⁾과 ‘서해 5도 학생’⁷⁾을 포함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인재 특별전형’⁸⁾ 운영을 통해 지방대학은

6)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6(사회통합전형의 운영) ①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라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제2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항 제14호 각 목의 사람

→ 14.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

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을 말한다.

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해당 지역 학생을 일정비율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인구감소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입학 특별전형을 추가
 하는 경우 지역 학생에 대한 중복 특례 부여로 대입 공정성·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지역 학생 대상 특별전형]

구분		근거	요건	선발비율	지역
기회균형특별전형	농어촌 학생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6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2항제14호 가목	1)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생과 부모가 모두 거주 (또는) 2)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생본인이 거주	연도별 입학정원의 4% 이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다만,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으로 설정)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서해 5도 학생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6제1항제3호 및 「서해5도법」 제15조제4항 및 시행령 제11조	농어촌전형 요건과 동일 (서해 5도 지역)	연도별 입학정원의 1% 이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 이내	「서해5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
지역인재 특별전형		「지방대육성법」 제15조	비수도권 소재 지역 중학교 졸업, 해당 지방대학 소재 지역 고등학교 졸업 및 해당 기간 내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학생본인이 거주	권역별 의학계열 입학정원의 20~40% 등 (간호대학 15~30%, 법학전문대학 5~15%)	비수도권 지역 전체 (권역별 구분)
기회균형특별전형 인구감소 지역전형 추가 (개정안)		「고등교육법」 제34조의 8제2항(신설)	인구감소지역의 초·중·고등학교 전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기간동안 부모와 함께 거주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자료 : 교육부)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 간 균형있는 선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할 것
2.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참고로 각 전형의 지역 간 관계를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 지정지역 중 군 및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과 도서벽지 지역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에 해당하고, 웅진군은 서해5도학생 특별전형 대상에 해당하며, ‘경기·인천’을 제외한 전 지역은 지역인재 특별전형 대상에 해당함.

□ 또한,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위장전입 하는 등의 편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등 당초 개정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 아울러, 현행 법률 체계상 기회균형 특별전형의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인구감소지역의 학생’에 대해서만 법률에 명시하여 그 근거를 두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이며,

그 외 참고로 개정안은 개정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2028학년도 입학생을 선발하는 전형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 상 대학입학 전형계획은 사전에 공표(대입정책은 4년 전, 대입전형기본사항은 2년 6개월 전, 대입전형시행계획은 1년 10개월 전 공표)하여야 한다⁹⁾는 점을 고려하여 그 적용 시기를

9)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2. 해당 입학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3. 그 밖에 대학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지키며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시·도 교육청, 대교협, 대학 등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법률안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관계기관 의견]

○ **교육부: 신중 검토**

- 사회통합전형의 제도 취지와 맞지 않으며, 예기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으로 사회혼란이 가중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농어촌 특별전형 등 인구감소 지역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입특례 운영 중

○ **시도교육청 : 신중 검토**

- (경기) 기존 대상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농어촌 전형과 중복될 수 있어 신설할 필요가 없고, 해당 지역의 변동가능성으로 학생·학부모가 진학 준비 시 자격 혼란을 겪을 수 있음
- (대구) 인구감소지역 재선정 주기(5년)에 따라 지원지역이 수시 변경될 수 있어 교육의 안정성·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5년마다 변동되는 복잡한 자격 요건으로 대학의 행정 부담 가중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신중검토**

-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다수의 지역에 농어촌학생·지역인재·서해5도 특별전형이 실시되고 있어, 특정 지역 학생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중복될 우려가 있으며, 현재도 대학이 법적의무 선발비율 준수과정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임

○ **대학 : 신중 검토**

- (세명대) 이미 지역인재전형으로 대다수 해당 지역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의 변동가능성으로 대입 지원자격 설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아주대) 농어촌 및 도서벽지, 서해5도 등 기존 시행되고 있던 각 특별전형 대상과 중복되며, 인구감소지역은 유동적이므로 지원자격에 대한 안정적 예측 어려움

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지켜야 한다.

- (한국교원대) 현행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역과의 중복성이 높고 전형 신설의 필요성과 차별성이 낮아, 기존 특별전형 내에서 대체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한양대ERICA) 다른 취약계층과의 역차별 문제, 대학 전형 운영의 자율성 침해, 수도권 대학으로의 학생 유출의 문제로 정책의 실효성이 낮음

문 의 처

02)6788-5185

참고 1

인구감소지역 개요

- (목적)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정주여건의 개선 및 지역의 활력을 도모
- (정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특별시 제외)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하는 지역
- (근거 법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023.1.1.시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2023.7.10.시행)」
- (지정 방식) 고시일로부터 5년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
-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89개, '24.2. 지정·고시 기준)
※ (최초) '21.10.19., 89개 지역 지정·고시 → (변경) '24.2.27., 군위군 대구시 편입 반영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참고 2

대입전형 사전예고제 체계

구분	대입정책	대입전형 기본사항	대입전형 시행계획	모집요강
주요 내용	수능 기본방향/ 과목/평가/ 출제형식 최대지원가능 횟수, 그 외 대입 관련 사전예고 필요사항	대입전형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시행계획 수립 원칙, 전형일정, 전형별 운영 기준 등을 수립하여 공표	대입전형별 모집시기 및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반영과목, 지원자격, 평가요소 등	전형별 지원방법, 지원 자격, 평가 요소, 등록 절차 등을 안내
주체	교육부	➡ 대학협의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대학	➡ 대학
시기 (청서는 26입시 기준)	4년 전 2022대입개편('18.) 공정성강화방안('19.)	2년 6개월 전 '23.8월 말	1년 10개월 전 '24.4월 말	(수시) '25. 5월 말 (정시) '25. 9월 초
근거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대입전형 기본사항

(자료: 교육부)